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68
----------	-----

2019. 9. 25.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9. 06. 강남구청장(건축과)

나. 상정의결

- 제27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19. 9. 19.)

“ 원안가결 ”

## 2. 제안이유( 제안자: 도시환경국장 안재혁 )

-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립된 강남구 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건축분야 안전에 대한 사업추진 등 전문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건축법」 제87조의3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징수하는 건축이행 강제금의 100분의 30

다.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건축안전센터의 운영경비

- 전문인력 배치 인건비(건축사, 구조기술사, 토목기술사)
- 건축분야 안전에 관한 사업비

라. 특별회계 일시 차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특별회계가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 일시차입

마. 특별회계 결산잉여금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사.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 9조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건축법」 제80조(건축이행강제금)
- (2)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 (3) 「건축법」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 (4)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 (5)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나. 예산조치 : 2019년 특별회계 예산반영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규제심사 : 특기할 사항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3) 성별영향평가 : 분석 평가시 특기할 사항 없음
- (4) 입법예고(2019. 6. 14. ~ 7. 4.)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5.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상원 )

- 본 제정안은 「건축법」 제87조의3<sup>1)</sup>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sup>2)</sup>를 근거로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함)를 설치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특별회계의 설치는 「건축법」 제87조의3<sup>3)</sup>와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설치된

- 1) 「건축법」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그 밖의 수입금
  -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 2) 「서울시 건축 조례」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개량·보수에 따른 용자 및 보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3.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점검비
    4.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비
    5. 법 제81조의2에 따른 빈집 정비에 따른 철거 및 철거보상비
    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7.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8. 제4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점검비 등
    9. 그 밖의 구청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 ③ 제2항제1호 및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용자 및 보조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안전점검 결과 D 또는 E급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 등 법령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구청장이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3)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다.
  1.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35조제3항, 제81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3.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바,

우리구에는 건축과 건축디자인팀에서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건축안전센터 운용, 전문인력, 소요예산 등 설명이 필요해 보임.

또한, 해당 규정(「건축법」 제87조의3)에는 특별회계 설치가 임의규정(~~ 설치할 수 있다)으로 되어 있음에도 설치하고자 하는 바, 설치 배경,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안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의 특별회계 설치는 「지방재정법」 제9조4)제2항에도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4항에 따라 해당 위원회(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는 바, 심의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아울러, 안 제8조(존속기한)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항임

- 안 제4조(세입)제1호에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규정하고, 제2호는 「건축법」 제35조의25)에 따른 서울시 지원금 및 보조금으로 규정한 한 바, 조례 제정 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예상액 및 서울시 보조예상액 등의 설명이 필요하며,

제3호는 「건축법」 제80조6)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으로 규정

- 
- 4)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건축법」 제35조의2(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융자 및 보조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 6)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한 바, 그간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실적 설명이 필요하며, 이행강제금 세입 비율이 자치단체별<sup>7)</sup>로 서로 다른 바 비교 설명도 필요함

- 안 제5조(세출)제1호에는 「건축법」에서 정한 용도를, 제2호는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제3호에는 건축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현황 설명은 필요해 보임.

또한, 세출 관련한 예상 비용에 대해, 본 제정안에 첨부되어 제출된 비용 추계서와의 연계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이에, 본 건은 조례 제정 목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일반회계로 운용하는 경우’와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경우’간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 및 논의 후에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 의: 건축안전센터의 기능 및 운영 방법,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운용할 때의 차이 및 장단점을 설명해주시기 바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에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7) 강동구(100분의 30), 노원구(100분의 70), 도봉구(100분의 40), 동대문구(100분의 30), 마포구(100분의 30), 서대문구(100분의 30), 서초구(100분의 10), 중랑구(100분의 30),

○ 답 변: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범국가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2018년 4월 19일 건축법 등이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서울시 건축조례도 2018년 7월에 개정되어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건축물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우리 구도 금년 1월 1일부터 건축안전센터를 출범하였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고 또한 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과 여러 가지 이행강제금의 목적 등을 살려 취지에 맞게끔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가적인 차원 및 서울시와 모든 구에서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임

○ 질 의: 건축안전센터 운영인력은 몇 명인지

○ 답 변: 전문직 직원(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건축사) 3명, 기술직 공무원 3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질 의: 강남구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현황은

○ 답 변: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은 서울시 건축 조례에서 시설물안전법, 기타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재난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건물주에게 정기 및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대상건축물을 제외한 건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해당되는 건물은 2만여 동으로 추정하고 있음

○ 질 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한 자치구 현황은

○ 답 변: 특별회계로 전환을 완료한 구는 8개구로, 현재 추진 중인 구는 우리 구 포함 14개구이며 3개구는 조금 늦어지고 있음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168
----------	-----

제출년월일 : 2019. 9. 6.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건축과

## 1. 제안이유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립된 강남구 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건축분야 안전에 대한 사업추진 등 전문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건축법 제87조의3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징수하는 건축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다.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건축안전센터의 운영경비
- 전문인력 배치 인건비(건축사, 구조기술사, 토목기술사)
- 건축분야 안전에 관한 사업비



라. 특별회계 일시 차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특별회계가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 일시차입

마. 특별회계 결산잉여금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사.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건축법 제80조(건축이행강제금)
- (2)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 (3) 건축법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 (4)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 (5)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나. 예산조치 : 2019년 특별회계 예산반영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규제심사 : 특기할 사항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3) 성별영향평가 : 분석 평가시 특기할 사항 없음
- (4) 입법예고(2019. 6. 14. ~ 7. 4.)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 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원금 및 보조금
3. 법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4. 그 밖의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 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제6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지진·화재 및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별 신속한 대응 및 민간건축물에 대한 전방위·종합적 안전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축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된다(안 제1조 및 제2조)

### 2. 비용추계의 전제

- 대상 :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운영(안 제2조)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및 토목 관련 기술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된 센터를 설립함에 있다.
- 전제
  - 센터장은 건축과장이 겸임하고 1개 팀 총 6명의 인원으로 설립(외부 전문가 3명)
  - 센터에 배치되는 인력은 직급별(상당)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나급)의 인건비로 산정함
  - 지진·화재,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조사 용역,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센터의 업무로 규정한 사업비는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산정
- 기간
  - 강남구 건축안전센터는 2019년 1월 1일부 설치되었고, 2020년 ~2023년을 비용추계 대상기간으로 함.
  -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는 발생
- 방법 :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항목별로 산정하여 합산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계
세입		-	-	-	-	-
		-	-	-	-	-
	소계(a)	-	-	-	-	-
세출	○ 인건비	209,268	209,268	209,268	209,268	837,072
	○ 운영비	29,180	29,180	29,180	29,180	116,720
	○ 조사·연구비	546,512	546,512	546,512	546,512	2,186,048
	○ 사업비	47,999	47,999	47,999	47,999	191,996
	소계(b)	832,959	832,959	832,959	832,959	3,331,836
□ 총 비용(a-b)		832,959	832,959	832,959	832,959	3,331,836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계
국비		-	-	-	-	-
구비	지방세수입	-	-	-	-	-
	세외수입	832,959	832,959	832,959	832,959	3,331,836
	지방채 등	-	-	-	-	-
민간		-	-	-	-	-
기타		-	-	-	-	-
합계		832,959	832,959	832,959	832,959	3,331,836

#### 5. 덧붙이는 의견

- 강남구 건축안전센터 운영경비의 대부분은 건축이행강제금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
  - 최근 3년간 평균 이행강제금 징수금액의 30%가 본 비용추계에서 가정한 센터의 연간 소요예산임
- 건축이행강제금 제도개요
  -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 등에게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집행벌 제도로,
  -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 미시정한 건축주(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위반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에서 지속부과
  - 위반내용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또는 전체면적) 및 건축법에서 정한 요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
    - 건폐율·용적률 초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 시가표준액의 50% 부과
    - 기타 위반사항 : 시가표준액의 10%범위 내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부과
  - 최근 3년(2016년 ~ 2018년) 연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구분	부과년도	부과금액		징수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축과	2016	221	1,335,320,910	210	1,235,279,380
	2017	298	1,256,548,690	263	1,164,398,790
	2018	190	1,050,260,280	135	689,658,380
공중주택과	2016	1,552	2,239,147,000	1,479	1,970,801,580
	2017	2,082	3,458,488,500	1,961	2,660,318,160
	2018	2,307	3,019,903,000	1,693	1,959,404,600
합계		6,650	12,359,668,380	5,741	9,679,860,890
3개년 평균		2,216	4,119,889,432	1,913	3,226,620,296

6. 작성자 : 강남구 도시환경국 건축과 김영균(☎ 3423-6167)